

2022년 연구보고서

장애인 안전지표 데이터 가용성 연구

2023. 4.



<http://kostat.go.kr/sri>



ISSN 2288-1166(Print)
ISSN 2733-4120(Online)



통계청
통계개발원

장애인 안전지표 데이터 가용성 연구

조진혜 · 민경아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통계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혁명시대에 통계청은 빅데이터의 활용,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등과 같은 통계생산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응답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청의 싱크탱크로서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은 국내의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통계개발원은 2006년에 개원한 이래 기존의 조사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각종 기법과 관련된 통계방법론적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 및 인구동향에 관한 분석연구 및 인구동태 관련 방법론 연구를 밀도 깊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은 「2022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 연구보고서」는 비확률표본을 위한 통계적 추론, 최신 차분정보보호 방법론 탐색과 통계 활용 방안 연구 등 「국가통계 방법론」 연구, 장애인 안전지표 데이터 가용성 연구 등 「정책통계」 관련 연구,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등 「경제통계」 관련 연구, 「2050 탄소중립」 관련 SDGs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등 「SDGs 지표」 관련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통계개발원이 전년에 국가통계 개선·개발을 위해 수행한 연구과제로서 국가통계 생산자의 통계개발 및 개선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23년 4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송준혁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장애인 안전지표 통계 현황	3
제1절 장애인 안전지표 개요	3
제2절 장애인 안전지표 데이터 현황	4
제3장 통계 미작성 지표별 데이터 구축	8
제1절 통계 미작성 지표별 데이터 수집	8
제2절 통계 미작성 지표별 데이터 가용성 분석	11
제4장 결론	51
참고문헌	55
Abstract	56

요 약

장애인 안전지표 중 일부지표(자연재해 장애인 사망자 수, 감염병으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 수, 장애인의 건강관리 실천율 등)는 관련 데이터 부재로 지표 활용이 어렵다. 장애인 안전지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 안전지표 64개 중 지표와 대응하는 통계정보가 없는 16개 지표의 연계 가능한 자료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통계 미작성 지표의 데이터 가용성 연구 결과, 연구대상 16개 지표 중 9개 지표의 데이터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직접 매칭되는 데이터가 발굴된 지표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지표의 정의나 범주의 변경·보완에 의해 연관성 높은 데이터를 발굴하거나 작성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2.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와, 50.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현황 지표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각각 매칭되는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한편, 9.인권침해경험, 26.건강관리 실천율, 54.교육 및 거주 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율, 55.교육 및 거주 시설의 재난대피 훈련 실시율, 60.재난 발생 시 피난유도등, 시각경보기 등의 위치 인식 여부, 이상 5개 지표는 연관되는 통계자료가 있어 지표 보완·대체 개념에서 검토 가능하다.

반면, 5.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6.온열·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자 수 지표는 연관되는 통계자료가 있으며 이 자료는 현재 장애인 관련 자료는 공표되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보고)자료이므로 생산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통계 미작성 지표 중 남은 7개 지표는 매칭되거나 연관되는 데이터는 없으나, 각 지표의 소관·유관기관의 보고·등록 등의 과정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등을 통한 자료 생산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활용을 제안하였다. 다만 지표 소관부처 간 지표 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 제공 협의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장애인 안전지표, 통계 미작성 지표, 데이터 가용성 분석

제 1 장

서 론

지표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현상을 반영하고, 그 결과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갈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표가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표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통계개발원의 장애인 안전지표 개발 연구(2021)는 장애인 안전정책 평가의 측정기반을 제공하고, 안전정책 결정과 집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 안전에 대한 복합적 정보 및 장애인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장애인 안전지표 개발 연구(2021)를 통해 안전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안전지표가 만들어졌다. 장애인 안전지표는 기존 안전관련연구, 국내외사례 연구, 전문가자문, 장애인심층인터뷰, 델파이조사 등의 연구과정을 통해 공들여 만들어진 지표이다.

그래서 더욱더 지표와 대응하는 통계정보의 역할이 강조된다. 장애인 안전지표로 선정된 64개 지표가 하나하나의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이 처한 환경을 대변하고, 개개인의 장애인 안전에 있어서의 취약요인과, 보호받고 관리되어야 할 정보 등을 보여주는 64개의 통계정보와 짝지어진다면 장애인 안전지표의 보다 의미 있는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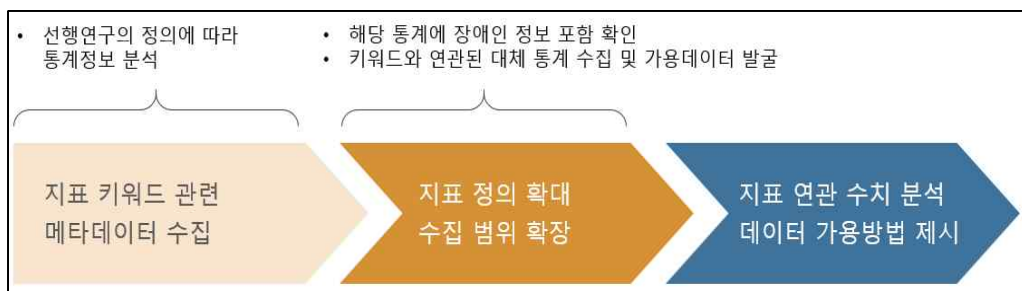
현재, 장애인 안전지표는 재난사고외인(19개), 취약요인(23개), 안전관리(22개) 세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분류에서 데이터미제공 지표는 각각 6개, 1개, 9개로 총 16개다.

<표 1-1> 장애인 안전지표 데이터 제공 현황

분류	지표수(개)	데이터제공 지표수(개)	데이터미제공 지표수(개)	제공률(%)
재난사고외인	19	13	6	68.4
취약요인	23	22	1	95.7
안전관리	22	13	9	59.1
계	64	48	16	75.0

곧, 장애인 안전지표 64개 중 16개는 안전지표를 나타내어 보여줄 통계정보가 없는 ‘통계 미작성 지표’다. 이 16개 지표에 대해 지표로써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수치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다만, 통계정보가 없는 통계 미작성 지표를 통계 작성 지표로 완벽하게 바꾸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통계 미작성 지표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각 지표별 장애인 특성과 취약요인을 고려한 대체·보완자료를 찾아 최대한 지표에 부합하는 통계자료와의 매칭에 노력하였다.



<그림 1-1> 통계 미작성 지표 가용자료 수집방법

이와 관련하여, 가용자료 수집방법은 위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지표 정의, 키워드와 관련된 통계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후 이 통계정보에 장애 여부, 장애인 구분 특성, 장애인 관련한 항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가용자료 범위를 지표 본래 정의로 제한하지 않고, 지표와 유사·확장·대체 개념에서 연관되는 자료까지 확장해 나갔다. 이를 통해, 지표를 수치화하고, 연관 통계정보로 수치화할 수 없는 지표는 이외 활용 가능한 자료원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고, 통계 미작성 지표의 가용성 제고를 위해 각 지표별 데이터를 찾아가는 자료수집방법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제2장은 장애인 안전지표 개요 및 64개 장애인 안전지표와 이들 지표 중 데이터가 있는 48개 지표들의 통계자료 현황을 기술하였다.

제3장은 데이터가 없는 16개 장애인 안전지표별 데이터 구축 과정을 담고 있다. 통계 미작성 개별 지표별 적합한 데이터를 찾아 매칭하는 과정 및 가용성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메타데이터, 가용성 분석, 활용방안 순으로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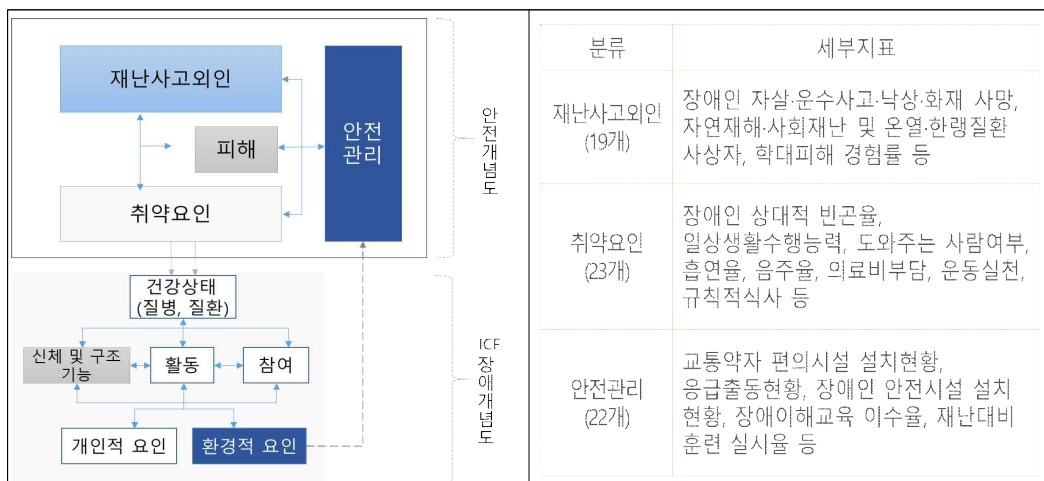
제4장 결론에서는 가용한 데이터 성격에 따라 통계 미작성 지표를 분류하여 설명하였고, 개별 지표별 데이터 가용성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다.

제 2 장

장애인 안전지표 통계 현황

제1절 장애인 안전지표 개요

통계개발원은 2021년 장애인의 안전 취약요인을 반영한 장애인 안전지표를 개발하였다. 장애인 안전지표는 ‘한국인의 안전보고서(통계개발원)’의 안전개념¹⁾을 기반으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장애개념 구성요인을 적용한 안전프레임워크와 이에 따라 도출된 영역별 세부지표 64개로 구성되었다.



<그림 2-1> 장애인 안전프레임워크와 안전지표²⁾

ICF 장애개념에 따르면, 장애인은 ①신체적·감각적·정신적 손상과 ②물리적·사회적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③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참여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이는 각각 안전개념의 취약요인·피해영역(①,③), 안전관리영역(②)과 연관된다. 또한 장애인은 차별과 편견, 학대 등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안전개념

1) 안전(S)을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피해(D)를 초래하는 재난·사고의 외인(E)과 취약요인(V)들이 관리(M)되는 상태’로 정의함. $S=F(E, V, D, M)$

2) 통계개발원(2021), 장애인 안전지표 개발연구

의 재난·사고외인과 관계가 있다.

또한 안전프레임워크는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18~'22년) 중점과제 및 장애인 안전종합대책('17~'21년)의 안전 구성개념과 연계하였고, 이를 토대로 1·2차 델파이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3개 영역의 64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제2절 장애인 안전지표 데이터 현황

1. 장애인 안전지표 현황

장애인 안전지표는 재난·사고 외인 19개, 취약요인 23개, 안전관리 2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지표’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지표를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결과로, 향후 관련 정책 입안 시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필요가 있는 지표이다. ‘관련 정책’은 연동되는 정책이 있는 지표로, 여기 해당하는 지표는 국내외 장애인 안전대책³⁾이나 SDGs 목표 등에서 다뤄진 세부정책과 연관된다. ‘통계작성’은 지표에 사용되는 통계가 있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표 2-1> 장애인 안전지표

대분류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핵심 지표	관련 정책	통계 작성
재난 사고 외인	사회재난	1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상자	○	○	
		2	화재로 인한 사상자	○	○	
		3	지하철 대형 사고로 인한 사상자		○	○
		4	감염병으로 인한 사상자		○	
	자연재해	5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6	온열·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자	○		
	장애특수	7	후천적 장애원인: 사고로 인한 장애 비율		○	○

3) 장애인복지 정책 전반을 다루는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18~'22)’과 장애인 안전관리에 초점을 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강화('17~'21)’ 및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장애인협력사업으로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채택한 행동전략인 ‘인천전략('13~'22)’ 등

대분류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핵심 지표	관련 정책	통계 작성
재난 사고 외인	차별 및 폭력	8	인권침해 및 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			○
		9	인권침해 경험	○		
		10	성희롱 및 성추행		○	○
		11	학대피해 경험률			○
		12	학교폭력			○
		13	경제적 착취			○
	외인사망	14	외부요인에 의한 조사망률	○	○	○
		15	자해(자살)	○		○
		16	운수사고			○
		17	낙상(추락)			○
		18	가해(타살)			○
		19	화재(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
취약 요인	인적요인	20	중복·중증장애 여부	○	○	○
		21	1인 고령장애인 가구 비율	○		○
	장애인식	22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		○
	사회적 자원	23	도와주는 사람 여부			○
		24	다른 사람 도움의 충분 정도			○
		25	자살시도 경험	○		○
	건강관리 실천	26	건강관리 실천율			
		27	운동실천			○
		28	규칙적 식사			○
		29	흡연율/ 매일 흡연율			○
		30	연간 음주율			○
	건강수준	31	만성질환 현황			○
	경제상황	32	상대적 빈곤율	○	○	○
		33	실업률			○
		34	의료비 부담	○		○
		35	최근 1년간 병원에 가고 싶을 때 못 간 적 유무			○
	일상생활 활동제약	36	일상생활수행능력	○		○
		37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		○
		38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
		39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운 정도			○
		40	현재 거주 중인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대분류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핵심 지표	관련 정책	통계 작성
취약 요인	산업 재해	41	주 사업장의 작업환경- 물리적 위험 수준			○
		42	업무 관련 사고 및 질병 발생 근로자수	○		○
안전 관리	예방	43	편의시설 설치비중	○	○	○
		44	장애인 시설별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			
		45	신고의무자 대상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참석 현황			
		46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정도		○	○
		47	특별 교통수단 도입 현황		○	○
		48	대중교통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현황		○	○
		49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	○	○	○
	대응	50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현황			
		51	응급 출동 현황			○
		52	재난·긴급상황 대처 수준	○	○	○
		53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재난 발생 시 대응 시스템 구비		○	○
		54	교육 및 거주 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율		○	
		55	교육 및 거주 시설의 재난대피 훈련 실시율		○	
		56	소방기관의 장애인 거주지 파악률		○	
		57	소방공무원 장애이해 교육 이수율		○	
		58	경찰공무원 장애이해 교육 이수율		○	
		59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	○
		60	재난 발생시 피난유도등, 시각경보기 등의 위치 인지 여부		○	
		61	특수학교 안전시설 설치 현황		○	○
		62	학대피해 장애인 전용쉼터			○
	복구 회복	63	활동지원인력: 이용자 대비		○	○
		64	퇴원 후 30일 이내 지역사회 복귀율		○	○

본 지표들은 우리나라 장애 안전정책의 장애영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애 관련 통계는 미미한 수준이고, 장애인 안전 관련하여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본 장애인 안전지표 중 지표별 해당통계가 있는 지표는 48개이며, 통계정보가 없는 지표는 16개이다.

장애인 안전지표 64개 전체지표가, 지표로서 완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연계 가능한 통계자료원을 발굴하여, 통계가 없는 지표들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찾는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안전지표 인용통계 현황

통계 미작성 지표의 연계데이터를 발굴하기 위해, 우선 현재 통계가 있는 지표의 데이터의 출처와 작성기관을 확인하였다. 48개 지표에 사용되는 작성통계는 보건복지부 등 총 8개 기관의 16종 통계자료로 분류가 가능하다.

장애인실태조사는 1인 고령장애인 가구비율, 도와주는 사람 여부, 일상생활수행 능력 등 22개 지표에서, 장애인건강보건통계는 자해, 운수사고 등의 6개 지표에서 인용하였다.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와 장애학대현황은 각각 3개 지표,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와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 각각 2개 지표의 근거통계로 활용되었다.

보건복지부	통계청	교육부
보건의료질통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장애인학대현황* 장애인활동지원통계정보	가계금융복지조사* 사회조사*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학교폭력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정안전부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재난연감
국토교통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개발원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인권의식실태조사*	장애통계연보

주) * : 승인통계

<그림 2-2> 통계작성 지표(48개)의 작성기관별 통계

이 중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장애인학대현황, 사회조사, 인권의식실태조사는 이후 본 연구의 통계 미작성 지표와 연계가 가능한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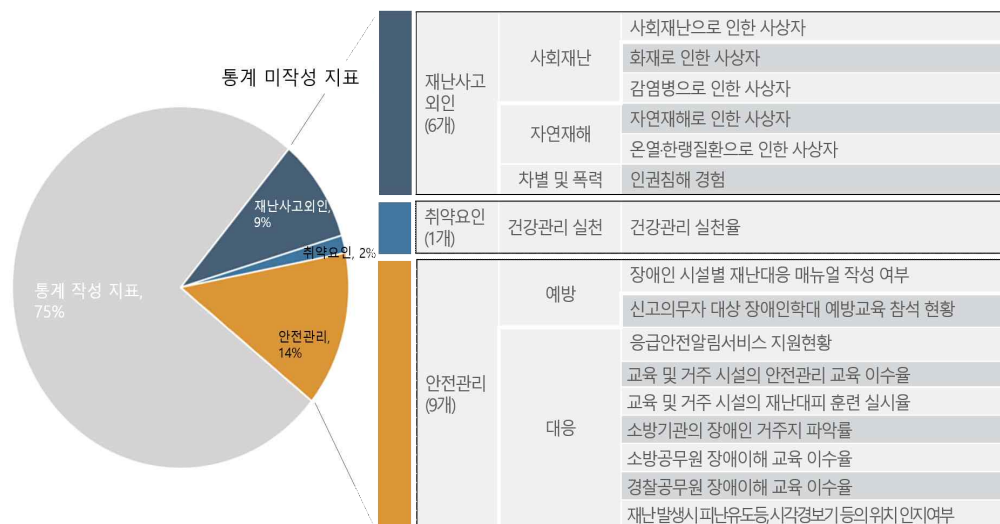
제 3 장

통계 미작성 지표별 데이터 구축

제1절 통계 미작성 지표별 데이터 수집

1. 통계 미작성 지표 현황

통계 미작성 지표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장애인 사상자 수, 감염병으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 수를 비롯한 16개 지표이다. 이상의 지표는 장애인에 특화된 안전개념과 장애인 관련 정책을 접목하여 개발한 것으로, 장애인 안전지표가 수치로 제시될 수 없어, 지표로서의 측정가능성과 가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3-1> 통계 미작성 지표(16개) 현황

2. 통계 미작성 지표 가용자료 수집방법

이상의 통계 미작성 지표는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측정 및 평가가 쉽지 않은 지표임에도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안전지표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거 자료가 없는 지표에 대한 가용할 수 있는 자료 수집과 자료와 지표 간 대응 및 활용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통계 미작성 지표의 가용성 증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지표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우선,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지표 키워드와 관련한 통계정보를 수집하였다. 이후 관련 통계에 장애 여부나 장애인 구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장애인 구분이 가능한 통계자료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외 지표와 관련한 통계정보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부처 및 유관기관의 법령 및 홈페이지의 공개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가용자료의 범위는 지표의 본래 정의에 한정하지 않았다. 즉, 연관자료로 판단되는 데이터는 해당 지표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더라도, 대체할 수 있거나, 부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 등도 포함하여 다루었다.

또한, 해당 지표 정보(지표명, 키워드 등)와는 별개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 여부 항목을 포함하는 작성통계 정보를 수집하여, 지표와의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현황에 따르면, 위에 언급된 통계 이외도 장애인 관련 통계로 장애인삶패널조사, 발달장애인일과삶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등이 있었으나 검토 결과 본 연구와의 관련성이 낮아, 최종적으로 아래 표의 주요 관련 통계를 위주로 지표별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표별로 가용성을 검토한 통계 및 관련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1> 지표별 활용 검토한 주요 관련 통계(정보)

순번	지표 번호	지표명	관련통계(정보)	작성기관
1	1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상자 수	산불통계	산림청
			화재발생총괄표	소방청
			해양사고현황	해양수산부
			산업재해현황	고용노동부
2	2	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	화재발생총괄표	소방청
3	4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	법정감염병발생보고	질병관리청
			결핵환자신고현황	질병관리청
			HIV/AIDS신고현황	질병관리청

순번	지표 번호	지표명	관련통계(정보)	작성기관
4	5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자연재해현황	행정안전부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5	6	온열·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자 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질병관리청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6	9	인권침해 경험	인권의식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7	26	건강관리 실천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사회조사	통계청
8	44	장애인 시설별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 맞춤형 재난대응 안내서)	행정안전부
9	45	신고의무자 대상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참석 현황	장애인학대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중앙장애인권익옹호 기관
10	50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현황	(이종성 의원실 요구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	54	교육 및 거주 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율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교육연수현황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발표)	보건복지부
12	55	교육 및 거주 시설의 재난대피 훈련 실시율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집	소방청
13	56	소방기관의 장애인 거주지 파악률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보건복지부
14	57	소방공무원 장애이해 교육 이수율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한국장애인개발원
15	58	경찰공무원 장애이해 교육 이수율		
16	60	재난 발생 시 피난유도등, 시각경보기 등의 위치 인지 여부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총 16개 지표			13개 기관 26종 통계(정보)	

본 연구는 각 지표별로 메타데이터, 가용성 분석, 활용방안 순으로 정하였다. 이후 제2절 본문의 ‘가.메타데이터’는 각 지표별 정의, 통계 작성방법, 통계표 등 메타데이터를 설명하고, ‘나.가용성 분석’은 장애인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자료 확보 및 지표의 확장·대체 개념과 관련되는 연관자료 수집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활용방안’은 지표의 통계작성을 위한 가용성 분석 결과이다.

제2절 통계 미작성 지표별 데이터 가용성 분석

1.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상자 수

가. 메타데이터

사회재난은 화재·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다음의 28개 유형의 재난피해로 정의된다.⁴⁾

1 산불재난	10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19 원전안전(방사능 누출사고)
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11 해양선박사고	20 전력
3 대규모 수질오염	12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21 원유수급
4 대규모 해양오염	13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22 보건의료
5 공동구 재난	14 교정시설 재난 및 사고	23 식용수
6 댐 붕괴	15 가축질병	24 육상화물운송
7 지하철 대형사고	16 감염병	25 GPS 전파 혼신
8 고속철도 대형사고	17 정보통신	26 해양유도선 사고
9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18 금융전산	27 공연장 안전사고
		28 초미세먼지

<그림 3-2> 사회재난 유형(28종)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사망, 실종, 부상자 수를 말한다. 2019년과 2020년 발생한 재난유형을 대상으로 보면, 사회재난의 사상자 수는 2019년 212명, 2020년 1,091명이다. 2019년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2020년은 감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았다. 2019년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상자가 128명, 해양선박사고 사상자가 40명이었고, 2020년은 감염병 사상자가 922명,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상자가 79명이었다.

4)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사회재난(2020년)

<표 3-2>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상자 수(명)⁵⁾, 2019-2020

번호	재난유형	2019년				2020년			
		계	사망	부상	실종	계	사망	부상	실종
	합계	212	52	149	11	1,091	998	83	10
1	산불재난	3	2	1		3	2	1	
9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128	12	116		79	13	66	
11	해양선박사고	40	11	19	10	22	11	2	9
12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50	38	12	
16	감염병					922	922		
29	기타	41	27	13	1	15	12	2	1

나. 가용성 분석

행정안전부는 각 재난유형별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재난연감을 작성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대상 집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나 자료를 개별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최근 3개년간 발생한 위 재난을 기준으로 볼 때, 각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승인통계는 산불통계, 화재발생총괄표, 해양사고현황, 산업재해현황이다.

우선, 산불은 산림청의 산불통계(국가승인통계 136025호)를 기초로 한다. 산불통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서’에 의한 보고통계로서 행정보고에 의해 작성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불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에 대해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고, 해당 양식(<그림 3-3>)을 통해서 인명피해에 관한 정보는 일차적으로 수집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와 관련한 소방청의 화재발생총괄표(국가승인통계 156001호), 해양선박사고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현황(국가승인통계 123020호),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국가승인통계 118006호)도 마찬가지로 기관별 법규에 따라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보고통계이며, 보고양식은 아래 그림과 같다.

5)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사회재난(2020년)

[illegible]

<그림 3-3> 각 기관 작성통계별 현황보고 양식6)

산림청의 산불통계,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현황,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보고 양식은 인명피해에 관한 정보는 일차적으로 수집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의 기초자료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는 재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바, 이를 연계키로 활용한다면 다른 행정자료와 결합 가능성은 있다.

이와 달리 소방청의 화재발생총괄표는 인명피해와 관련한 화재피해 조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상자의 취약계층(유아, 어린이, 독거노인) 여부와 장애 여부에 대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 활용방안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상자는 각 재난유형별 주관기관이 수집한 통계자료에 의해 파악 가능하고, 주요 기관별 정보수집 방법은 보고통계이나, 보고양식과 체계는 각 기관과 재난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인적사항 수집 정도 및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도 기관마다 다르다. 그러나 사회재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로 정의하는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조항에 따라 각 재난관리 주관기관마다 위기관리 매뉴얼이 작성되고 있는 만큼 중요하다.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 표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적용·가동하여 각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해당 사회재난별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이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장애인 사상자 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

가. 메타데이터

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는 소방청에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집계하는 화재발생총괄표 통계에 의한다. 화재발생총괄표는 화재발생건수, 발화요인, 발화장소, 발화기기 및 사상자와 재산피해 현황 등을 작성하는 보고통계이다. 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는 276명, 부상자는 1,854명이다.

<표 3-3> 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명)⁷⁾, 2012~2021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소계	2,222	2,184	2,181	2,090	2,024	2,197	2,594	2,515	2,283	2,130
사망자	267	307	325	253	306	345	369	285	365	276
부상자	1,955	1,877	1,856	1,837	1,718	1,852	2,225	2,230	1,918	1,854

나. 가용성 분석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에 따라 ‘화재피해 조사서(인명)’를 작성하는데, 이는 사상자 성명, 연령 등 인적사항, 사상 시 위치와 행동, 사상원인, 사상 전 상태, 사상부위 및 외상, 사상자(취약) 내용을 조사한다.

이 중 사상자(취약) 정보에 장애 여부 항목이 있는데, 장애여부란에서 장애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장애유형 분류의 기준이 되는 15개의 장애유형을 모두 다루지는 않으나, 화재에 특히 취약한 대표적 장애유형인 외부 신체기능 장애 중 안면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를 비롯하여 정신적 장애 유형인 지적, 자폐증을 포함한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를 다루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표 3-4> 참고- 장애유형 분류 체계⁸⁾

대분류	중분류	장애유형(15개)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7) KOSIS(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2022.11.21.

8) 통계설명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2022.11.21.

이 결과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등을 비롯한 장애인 사상자는 2021년 기준 사망자 36명, 부상자 57명이다. 2020년 사망자 52명, 부상자 61명에 비해 각각 16명, 4명 줄었다.

다만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공개되고 있는 사상 전 인적 상태 통계는 복합된 정보(중복 발생)로 화재발생통계표의 사상자 통계 결과와 같지 않아 사용에 유의가 필요하다.

<표 3-5> 화재로 인한 사상 전 인적 상태(명)⁹⁾, 2017~2021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합계	348	1,843	384	2,215	335	2,283	419	1,990	313	1,898
장애인 소계	32	59	40	46	32	50	52	61	36	57
뇌병변장애	0	0	0	0	3	11	6	8	4	7
발달장애 (자폐증)	0	0	0	0	0	0	2	2	1	2
시각장애	0	0	0	0	1	2	1	0	2	0
신장장애	0	0	0	0	2	3	4	2	1	7
언어장애	0	0	0	0	1	2	1	2	0	2
정신장애	12	30	19	27	8	16	14	23	6	19
지체장애	20	29	21	19	14	15	19	16	15	15
청각장애	0	0	0	0	3	1	5	8	7	5
장애인 이외 소계 (수면 음주, 해당없음 등)	316	1,784	344	2,169	303	2,233	367	1,929	277	1,841

다. 활용방안

소방청의 사상 전 인적상태통계는 15개 장애유형 중 8개 장애유형별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상자 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내부신체기능 장애를 제외한 주요 외부신체 기능 및 정신적 장애 유형에 관한 장애인 사상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9)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22.6.20.

3.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

가. 메타데이터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발생보고(국가승인통계 117052호) 통계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특성 및 관리방법을 고려하여 감염병을 분류하고 있는데, 2020년 1월부터 이를 개편하여 1급에서 4급까지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제2급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고, 제4급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7일 이내 신고가 필요하다.

법정감염병은 발생 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하게 된다. 감염병 발생 및 감염병환자 등 사망 관련 내용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여 통계작성에 활용한다. 질병관리청의 보고통계인 법정감염병발생보고의 작성항목은 법정감염병 종류별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로, 본 지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법정감염병발생보고의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법정감염병발생보고는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표본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자료는 제외하여 작성하고 있고, 감염병 감시연보(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법정감염병 추이 분석 시 표본감시 감염병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만 다루도록 한다.

법정감염병발생보고 통계에 따르면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64종 중 결핵과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제외한 62종의 사망자 수는 제1급 신종감염병증후군 5,024명, 카바페넴 내성장내세균속균증(CRE) 감염증을 비롯한 제2급 315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비롯한 제3급 90명이다.

결핵과 후천성면역결핍증은 각각 결핵예방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하고, 이는 각각 결핵환자신고현황(국가승인통계 117107호), HIV/AIDS신고현황(국가승인통계 101054호)으로 작성된다. 감염병 감시연보(질병관리청, 2022.8.)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사망자는 2021년 기준 112명이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통계청 작성통계인 사망원인통계(국가승인통계 101054호)에 따르고 있는데 2020년 기준 1,356명이다.

<표 3-6> 법정감염병 전수감시 사망자 수(명)¹⁰⁾, 2020-2021

급별(1)	급별(2)	2020년	2021년
제1급	소계	922	5,024
	신종감염병증후군	922	5,024
제2급	소계	297	315
	세균성이질	1	0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0
	A형간염	0	2
	폐렴구균 감염증	68	36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226	277
	E형간염	1	0
제3급	소계	120	90
	파상풍	2	0
	급성B형간염	3	1
	일본뇌염	2	5
	C형간염	7	8
	말라리아	1	0
	레지오넬라증	28	10
	비브리오패혈증	25	22
	쯔쯔가무시증	7	11
	신증후군출혈열	2	2
	크로이츠펔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	6	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37	26

10) KOSIS(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발생보고), 2022.10.05.

고·보고) 서식은 사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입하여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를 입수하여 주민등록주소지 확인 및 오류 검증에 활용한다. 당일 보고된 감염병환자 정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행정안전부에 환자의 성명, 주민번호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에 환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록거주지를 매칭하여 제공하고, 자료내검, 이상치 처리 등을 거쳐 발생자와 사망자 정보를 공표한다.

따라서 현재의 감염병발생보고체계의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장애 여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 지표인 감염병으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 수 산출이 불가하다.

다. 활용방안

장애인 감염병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보고체계에 따라 수집하는 대상자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자료와의 연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키로 활용하여 장애인등록자료와 매칭하여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합의와 부처 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4.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수

가. 메타데이터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이라고 한다. 자연재해 대책법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자연재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연재해 피해·복구현황을 보고 받아 자연재해현황(국가승인통계 156003호)을 작성한다. 여기에 폭염 인명피해와 관련하여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고, 재해연보 발간을 위한 태풍, 강수현황, 기후 등과 관련하여 기상청 자료를 제공받는다.

본 지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자연재해 인명피해자로, 실종자를 포함한 사망자를 이른다. 자연재해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연재해 인명피해는 사망 72명과 실종 3명으로 전체 75명이다. 이상의 인명피해는 호우 44명, 폭염 29명, 태풍 2명이다.

지난 10년간 자연재난 원인별 인명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중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포함된 2018년에 처음 집계되었고, 2019년 이후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근거로 작성하고 있다.

<표 3-7> 원인별 인명 피해현황(명)¹¹⁾, 2010~2020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태풍	7	1	14	-	-	-	6	-	2	18	2
호우	7	77	2	4	2	-	1	7	2	-	44
태풍·호우	-	-	-	-	-	-	-	-	1	-	-
폭염	미산정								48	30	29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2020년)는 2020년 사망자 75명에 대하여 원인별 인명피해 발생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표 3-8> 원인별 인명피해 발생현황(명)¹²⁾, 2020

구분	합계	하천급류	산사태	침수	붕괴 (축대, 절개)	폭염	기타
사망·실종자	75	18	14	5	7	29	2

반면,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는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하는 사망원인통계는 세계보건기구(WHO) 사인분류지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한 근원요인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자연의 힘에 노출’(분류코드 X30~X39)은 ‘눈사태, 산사태 및 기타 지각운동에 의한 피해’(X36), ‘지각변동 폭풍의 피해’(X37), ‘홍수의 피해’(X38) 등을 포함한다.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위 분류에 따른 사망자는 각각 16명, 26명, 8명이다.

11)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자연재난(2020년)

12)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자연재난(2020년)

<표 3-9> 원인별 인명피해 발생현황(명)¹³⁾, 2020

구분	자연의 힘에 노출 (X30~X39)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X30)	과다한 자연한랭에 노출(X31)	눈사태, 산사태 및 기타 지각운동에 의한 피해(X36)	지각변동 폭풍의 피해(X37)	홍수의 피해(X38)	기타
사망자	190	29	109	16	26	8	2

나. 가용성 분석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보고한다. 피해 발생 시군구에서는 사망·실종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 여부 구분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다.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사유재산피해신고’에도 피해자 및 신고자 정보, 피해종류, 피해금액,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조회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세부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입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망자원인통계 결과 자연의 힘에 노출에 대한 세분류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자에 적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까.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자 사망원인정보는 장애인건강보통통계(국가승인통계 117102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사망원인분석 작성에 활용됨으로 의미가 있다.

다만, 위 통계표 결과에서 보듯 사망원인의 표준질병·사인분류는 자연재난의 유형이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자연재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로,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망원인통계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의 원사인·사망원인들 중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이나 신체의 손상 또는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별로 달리 해석하거나 분류될 수가 있다. 사망자가 자연재난조사 결과 자연재해로 인정받더라도 사망원인통계에서는 자연의 힘에 노출 이외 분류에 속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연재해가 아닌 개인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로 판단되었다 해도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은 자연의 힘에 노출 분류에 속할 수도 있다.

13)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8~2020; 통계청 MDIS 추출다운로드, 2022.10.12.

다. 활용방안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군구에서는 사망·실종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 정도를 조사하여 보고하므로, 이 같은 인적사항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활용은 가능해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등록장애인 자료와의 연계가 가능하다면 개인 식별번호를 통해 장애인을 구분할 수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 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을 입수하여 장애인 사망원인 통계(장애인건강보건통계)를 작성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러나 사망원인분류와 자연재해 사망의 원인 간 포괄범위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5. 온열·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자 수

가. 메타데이터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각각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1일 통계를 게시한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약 500개의 참여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9월 중 폭염종합대책 기간에 맞춰 운영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고하고, 이 내용은 관할 보건소와 시·도의 승인을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된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운영하고, 신고 대상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및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다. 이외 신고방법과 보고체계는 온열질환의 그것과 동일하다.

지표 ‘온열·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각각 파악된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및 한랭질환자와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를 의미한다.

질병관리청 감시체계연보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온열질환자는 2020년 1,078명, 2021년 1,376명이다. 이 중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020년 9명, 2021년 20명이다. 특기할 점은 2018년은 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바, 이 해 온열질환자는 4,526명, 이 중 사망자는 48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3-10>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 사망자 수(명)¹⁴⁾, 2011~2021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온열질환자	443	984	1,189	556	1,056	2,125	1,574	4,526	1,841	1,078	1,376
사망자	6	15	14	1	11	17	11	48	11	9	20

한편,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한랭질환자는 2020-2021년 433명, 2021-2022년 300명이다. 이 중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는 2020-2021년 7명, 2021-2022년 20명이다.

<표 3-11> 한랭질환자 및 한랭질환 사망자 수(명)¹⁵⁾, 2013-2014~2021-2022

구분	'13-'14년	'14-'15년	'15-'16년	'16-'17년	'17-'18년	'18-'19년	'19-'20년	'20-'21년	'21-'22년
한랭질환자	258	458	483	441	631	404	303	433	300
사망자	13	12	26	4	11	10	2	7	9

다만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수조사가 아닌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표본감시 결과이다. 따라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와는 그 결과가 다르다. 사망원인통계는 사망신고서를 바탕으로 성명, 성별, 직업, 사망원인 등의 항목을 작성하는데 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통계청 사망자 수가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표주기가 1년으로, 작성기준연도 익년 9월에 발표하므로 1일 통계로 작성하는 응급실 통계에 비해 시의성은 떨어지므로 두 자료를 보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도 폭염 사망자와 관련하여, 폭염 대책기간 동안에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의 사망자 수를 활용하고, 재해연보의 공식 폭염 사망자 수는 2019년 기준 자료부터 사망원인통계의 과다한 자연열이나 일광에 노출로 인한 사망자 수를 활용하고 있다.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로 인한 사망자가 2018년 162명, 2019년 30명, 2020년 29명이며, 과다한 자연한랭에 노출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138명, 2019년 107명, 2020년 109명이다.

14) 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2021년)

15) 질병관리청, 한파으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2022년)

<표 3-12> 질병관리청과 통계청 사망자 수 비교(명)¹⁶⁾, 2018~2020

질병관리청 응급실감시체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구분	사망자				사망자			구분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온열질환	48	11	9		162	30	29	소계
					162	30	29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X30)
					-	-	-	일광에 노출(X32)
한랭질환	10	2	7	9	138	107	109	과다한 자연한랭에 노출(X31)

나. 가용성 분석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 신고서식은 환자 인적사항, 내원정보, 체온·증상 등 환자의 초기평가, 증상발생일시·장소 등 온열질환 관련 사항 및 퇴원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환자의 인적사항의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10개 대분류(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등) 이외에도 주부, 학생, 무직, 노숙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타 구분으로 임신부, 외국인, 초고령층을 제시하여 다소 상세한 인적정보 파악이 가능해 보인다.

환자 인적사항	성별	☐ 남 ☐ 여
	태어난년도	○○○○년 (4자리 입력)
	거주지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발생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보험유형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일반 ☐ 미상 ☐ 기타 _____
	직업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사무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판매종사자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단순노무종사자 ☐ 군인 ☐ 주부 ☐ 학생 ☐ 무직(노숙인 제외) ☐ 노숙인 ☐ 기타 _____ ☐ 알수없음
	기타 구분	☐ 임신부 ☐ 외국인 ☐ 초고령층

<그림 3-6> 온열질환자 신고서식 일부

16)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8~2020, 통계청 MDIS 추출다운로드, 2022.10.12.

한랭질환자 신고서식의 환자 인적사항도 위와 같다. 질병관리청은 상세 운영결과 통계를 통해 위 성별, 연령별, 보험유형별, 직업별 등으로 분석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본 서식은 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의 인적사항보다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과 마찬가지로 장애 여부는 알 수 없어 본 서식에 따른 자료수집으로는 온열·한랭질환에 의한 장애인의 사상자 수는 파악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사망원인통계는 어떨까?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은 장애인건강보건통계를 매년 작성한다. 장애인건강보건통계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전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건강행태, 동반질환 등의 항목과 더불어 사망원인 관련 항목을 다루는데, 장애인의 사망원인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사망원인자료를 입수하여 장애인 조사망률, 장애특성별 사망원인 등을 작성하고 있다.



<그림 3-7> 장애인 사망 데이터베이스 구성¹⁷⁾

장애인 사망원인별 조사망률은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상위 30위까지의 사망원인을 공표한다. 그러나 등록장애인 전수와 연계되는 통계청 사망원인자료의 사망원인분류코드를 활용하고 있는 바, 사망원인분류 중 과다한 자연열 및 자연한랭에 노출로 인한 장애인 수 파악이 가능해 보인다.

다. 활용방안

장애인 온열·한랭질환자 지표 작성은 질병관리청의 온열·한랭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시 취득하는 대상자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자료와의 연계에서 개인식별번호를

17)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2022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연계키로 활용하여 장애인등록자료와 매칭하여 장애인 여부를 가르는 방법이 있다. 다만 현 수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에서 매칭하여 활용하는 것은 주소정보로, 그 이상의 연계에는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다만, 온열·한랭질환 사망자를 사망원인통계에 근거하여 파악한다면, 장애인건강보건의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통계는 이미 자료 입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작성·공표하고 있으므로 현 수준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6. 인권침해 경험

가. 메타데이터

인권의식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129001호,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인권의식과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등의 실태 등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고,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의식실태조사는 ‘인권침해 경험’을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과 사회, 경제, 환경 등의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으로 나눈다.

먼저, 2021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 경험의 경우, ‘정치적 의사표현 제지’ 경험이 3.8%로 가장 높다. 2020년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경험이 2021년은 3.3%로 두 번째로 높다.

<표 3-13>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 경험(%)¹⁸⁾, 2020~2021

침해경험별	2020년	2021년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3.2	3.3
정치적 의사 표현 제지	2.5	3.8
종교 선택, 활동 제한	1.6	2.3
단체 결성 및 가입 제한	0.9	2.1
집회나 시위 제한	1.6	1.5
신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2.1	1.6
경험 없음	91.6	90.2

18) KOSIS(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2022.10.26.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을 제외하고, 사회·경제·환경 측면에서 인권침해 경험은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2020년 15.1%와 2021년 8.7%로 가장 높았다. ‘편의 시설 부족, 거리가 멀어 문화예술시설 이용 못함’은 2020년 6.9%와 2021년 4.4%로 각각 두 번째로 높다.

<표 3-14> 인권침해 경험(%)¹⁹⁾, 2020~2021

침해경험별	2020년	2021년
안전 위협(질병, 자연재해 제외)	2.8	2.5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함	2.9	3.1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 어려움	15.1	8.7
편의 시설 부족, 거리가 멀어 문화예술시설 이용 못함	6.9	4.4
신문, 방송, 인터넷에 사생활 공개	1.3	1.0
경험 없음	77.9	85.4

나. 가용성 분석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의식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로, 2021년 조사는 10,106가구의 17,5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응답자에 대하여 혼인상태, 교육정도, 종교, 취업 여부 등의 개인 관련 특성을 조사한다. 이 조사로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인권의식실태조사의 다른 문항인 ‘폭력, 일자리, 일상생활 등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나’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부분적, 혹은 간접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침해 경험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020년 2.0%, 2021년 1.4%로 나타났다.

<표 3-15>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²⁰⁾, 2020~2021

차별 이유	2020년	2021년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11.8	7.6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2.1	1.6
종교를 이유로	2.5	1.4
사상 또는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6.8	2.6

19) KOSIS(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2022.10.26.

20) KOSIS(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2022.10.26.

차별 이유	2020년	2021년
장애를 이유로	2.0	1.4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12.9	7.5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13.0	6.2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11.0	5.4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8.7	4.2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1.6	1.0
키, 몸무게, 외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5.7	3.0
미혼(비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4.0	1.8
한부모, 미혼(비혼) 모/부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2.2	1.2
질병 및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2.7	1.4
출신지역을 이유로	3.6	1.8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경우를 차별 유형별로 보면, 따돌림이나 배제를 당한 경우가 37.1%,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을 받은 경우가 30.9%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6> 차별 경험의 유형(%)²¹⁾, 2021

차별 이유	차별 유형			
	폭행, 위협, 조롱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	채용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 차별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당하는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장애를 이유로	23.6	30.3	30.9	37.1

다만, 본 조사의 표본설계는 장애인 응답자 추출을 사전에 고려한 설계가 아니며, 차별 이유를 장애로 응답한 사람 모두가 등록장애인인지 알 수 없어, 실제 등록장애인이라도 차별 경험이 없다고 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응답비율로만으로 볼 때도 전체 응답자 가운데 1.4%로 적다. 또한 차별과 인권 침해의 정의와 범위가 달라, 이로써 장애인의 인권침해 경험 지표로 대체하여 사용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차별이 평등권의 침해로써,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인지하게 되는 인권침해 영역이므로, 활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와 별개로, 전국의 등록장애인 7,025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국

21) KOSIS(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2022.10.31.

가승인통계 117032호, 보건복지부)의 조사내용 중에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가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 심층면접조사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조사통계로,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지원, 교육, 취업, 주거, 생활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인권침해 경험의 대체 가능성 측면에서 장애인실태조사의 사회적 차별 경험 문항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전학,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사회적 차별 분야 구분에 보험제도, 정보통신 이용이나 지역사회생활 등이 포함된 것도 특기할 만하다.

<표 3-17> 사회적 차별 경험(%)²²⁾, 2020

구분		2020년
입학·전학	유치원(보육시설)	24.7
	초등학교	37.2
	중학교	33.5
	고등학교	26.5
	대학교	8.8
학교생활	교사로부터	6.9
	또래학생으로부터	29.4
	학부모로부터	12.1
결혼		17.7
자녀 양육·교육 시		2.7
취업		21.5
직장생활	소득(임금)	13.6
	동료와의 관계	13.5
	승진	7.8
운전면허 제도상(취득 시)		2.9
보험제도상(계약 시)		13.9
의료기관이용 시		3.7
정보통신이용 시(방송 포함)		4.6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6.8

22) KOSIS(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2022.10.31.

다. 활용방안

장애인 인권침해 경험은 인권의식실태조사의 인권침해 경험에서는 파악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차별 침해 경험을 통해 부분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인권의식실태조사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비율과 장애인실태조사의 사회적 차별 경험 비율이 그것이다. 다만 장애인을 대상 모집단으로 하는 장애인실태조사의 활용이 좀 더 적합해 보인다.

7. 건강관리 실천율

가. 메타데이터

지역사회건강조사(국가승인통계 117075호, 질병관리청)는 현재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건강생활실천율을 산출한다. 이 중 절주는 최근 1년간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미만, 여자는 5잔 미만으로 주 1회 이하로 마신 것으로, 걷기는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시군구 단위 조사이며, 전국 결과는 시군구 중앙값으로 공표한다. 2021년 건강생활실천율은 전국 29.6%로, 2020년 26.4%에 비해 3.2%p 증가하였다.

<표 3-18> 전국 건강생활실천율 추이(%)²³⁾, 2012~2021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시군구 중앙값	28.5	26.2	25.6	28.3	27.0	27.0	30.7	28.4	26.4	29.6

나. 가용성 분석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가구수는 128,658가구, 조사완료자 수는 229,242명이다. 조사내용은 가구특성에 대하여 세대유형, 가구소득을, 개인특성에 대해서는 교육, 경제활동, 직업, 혼인상태 등을 조사한다. 별도로 장애인을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으므로, 본 조사결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실천율을 알 수는 없다.

반면, 사회조사(국가승인통계 101018호, 통계청)는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조사하는데, 짝수해에 기본, 가족, 건강, 범죄와 안전 등의 분야를 조사한다. 2022년은 전국 약 18,445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5,792

23) 질병관리청,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2021년)

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건강 부문 조사 내용 중 건강 관리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 이는 아침식사, 수면, 운동, 건강검진 실천 여부를 확인한다.

건강 관리				
10 귀하는 평소 다음 각 항목의 활동을 실천하는 편입니까?				
	1. 아침 식사	2. 적정 수면(6~8시간)	3. 규칙적 운동	4. 정기 건강 검진
① 실천한다				
② 실천하지 않는다				
참고 * '3. 규칙적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려고 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함(단, 부정기적인 운동이나 일상적인 걷기 등은 제외) * '4. 정기 건강 검진'은 건강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 경우로, 2~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경우도 해당됨(직장 건강 검진, 학생 건강 검진 포함)				

<그림 3-8> 2020년 사회조사표(가구주)²⁴⁾

또한 개인특성에 관한 조사항목으로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이외에 '장애인복지카드 소유 여부' 항목이 있는데, 2020년 사회조사 기준, 장애인복지카드 소유 여부 문항의 전체 응답건수인 37,750건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다' 2,416건(6.4%), '가지고 있지 않다' 35,334건(93.6%)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은 행정자료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부로 대체하여 조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관리 실천 여부, 즉 아침 식사와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을 실천하는 비율을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장애인의 아침식사 실천율은 81.9%, 적정 수면 실천율은 77.8%,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35.9%,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82.3%이다. 위 네 가지 동시 실천율은 2020년 기준 24.9%로 2018년 24.0%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표 3-19> 건강관리(13세 이상 인구)를 실천하는 장애인(%²⁵⁾, 2016~2020

장애인	2016년	2018년	2020년
건강관리 실천(아래 4가지 모두)	23.8	24.0	24.9
아침 식사하기	75.5	80.8	81.9
적정 수면(6~8시간)	76.4	76.2	77.8
규칙적 운동	36.7	35.1	35.9
정기 건강검진	71.3	81.9	82.3

24) 통계설명자료(통계청, 사회조사), 2022.10.31.

25) 통계청, 사회조사, 2016~2020, 통계청 MDIS 추출다운로드, 2022.11.18.

이를 비장애인의 결과와 비교하면, 2020년 기준 비장애인의 아침식사 실천율은 63.8%, 적정 수면 실천율은 80.3%,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41.29%,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80.6%이다. 위 네 가지 동시 실천율은 2020년 기준 25.5%로 2018년 24.8%에 비해 0.7%p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아침식사 실천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18.1%p,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1.7%p 높고, 적정 수면 실천율은 2.5%p,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5.3%p 낮다. 아침식사,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동시 실천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0.6%p 낮았다.

<표 3-20> 건강관리(13세 이상 인구)를 실천하는 비장애인(%)²⁶⁾, 2016~2020

비장애인	2016년	2018년	2020년
건강관리 실천(아래 4가지 모두)	21.5	24.8	25.5
아침 식사하기	66.9	66.7	63.8
적정 수면(6~8시간)	77.2	77.6	80.3
규칙적 운동	38.1	38.5	41.2
정기 건강검진	60.2	80.3	80.6

다. 활용방안

건강관리 실천율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건강생활실천율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없고, 사회조사의 건강관리 실천율 자료로 대체 가능하다. 물론 두 자료 간 건강관리 실천 정의는 각각 금연, 절주, 걷기와 아침식사,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비교 불가능한 항목이 있으나, 사회조사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사회조사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분이 가능한 점에서 사회조사의 아침식사,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을 모두 실천하는 경우를 건강관리 실천율로 대체하는 것이 본 지표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인다.

26) 통계청, 사회조사, 2016~2020, 통계청 MDIS 추출다운로드, 2022.11.18.

8. 장애인 시설별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

가. 메타데이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위기관리 매뉴얼은 작성기관과 그 내용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구분되어 있고, 이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또한 별개 조항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여부와 관련한 통계자료는 부재한다.

나. 가용성 분석

이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복지시설(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 또한 부재하다.

본 지표의 조사대상은 장애인 복지시설이고,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2020년 기준 거주시설 1,539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519개소, 직업재활시설 720개소 등이다. 약 3,800여 개의 시설이 각 시설 특성 및 이용자 유형 등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직접 작성하고, 이행하고 있는지에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표 3-21> 장애인복지시설 현황(개소)²⁷⁾, 2012~2020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거주시설	1,348	1,397	1,457	1,484	1,505	1,517	1,527	1,557	1,539
직업재활시설	478	511	541	560	582	625	651	683	720
지역사회재활시설	1,140	1,184	1,213	1,248	1,303	1,333	1,373	1,486	1,519
생산품판매시설	16	16	17	17	17	17	17	17	17
의료재활시설	17	18	18	18	20	19	19	18	18

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2021년)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국가승인통계 117035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세부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통계로, 전국의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전수조사하는데 조사대상 건물 유형별 분류 중 노유자시설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지표와 관련한 문항을 추가 설계하는 방법은 있다. 다만 본 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으로, 위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표의 대상시설과 포괄 범위가 다르다.

반면, 본 지표를 간접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 재난대응 매뉴얼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행하는지에 대한 정의로 해석한다면,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주체의 관점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장애인 맞춤형 재난대응 안내서’는 화재와 지진, 2개의 재난유형과 4가지 장애유형으로 구분한 총 8종의 유형으로, 장애인과 지원자의 역할도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장애인 이용시설, 거주시설 등에서의 재난 조치 및 훈련 시나리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유관기관에 공문서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자치단체의 장애인 시설에 배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시설거주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의 특성과 시설별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그림 3-9>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표지²⁸⁾

28) 행정안전부(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 및 보건복지부(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

이 같이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재난관리 매뉴얼 작성주체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매뉴얼을 얼마나 배포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open.go.kr) 등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활용방안

장애인 시설별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 지표는 기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에서 항목 추가 검토하는 방법, 또는 위기관리·위기대응 매뉴얼 작성·관리 주체(중앙부처 등)의 재난대응 매뉴얼 배포 여부로 대체 조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9. 신고의무자 대상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참석 현황

가. 메타데이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학대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인식하고, 발견하여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²⁹⁾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참석현황 통계는 부재한다.

나. 가용성 분석

장애인학대현황(국가승인통계 117108호)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학대 신고 접수된 건수를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보고통계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무요원,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 등이 있다.

이들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건수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 총 신고건수 2,461건 중 신고의무자는 771건(31.3%), 비신고의무자는 1,690건(68.7%)을 차지한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각각 359건, 195

29)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2020년)

건으로 비중이 높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신고의무자 유형은 2021년 기준 전체 23개 유형 중 7개 유형에 해당한다.

<표 3-22> 신고 및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건, %)³⁰⁾, 2020~2021

유형별		2020년		2021년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신고 의무자	소계	728	100.0	771	100.0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85	25.4	195	25.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29	45.2	359	46.6
	사회복무요원	-	-	3	0.4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57	7.8	85	11.0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3	1.8	7	0.9
	의료기사	1	0.1	-	-
	응급구조사	-	-	-	-
	구급대의 대원	1	0.1	-	-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종사자	9	1.2	6	0.8
	보육교직원	4	0.5	3	0.4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	-	1	0.1
	초·중·고 교직원 등	69	9.5	57	7.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30	4.1	30	3.9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1	0.1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21	2.9	15	1.9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2	0.3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5	0.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2	0.3	1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1	0.1	1	0.1
	장기요양요원	4	0.5	2	0.3
비신고 의무자	소계	1,341	100.0	1,690	100.0
	본인	274	20.4	325	19.2
	가족 및 친인척	238	17.7	300	17.8
	유관기관 종사자	629	46.9	783	46.3
	타인	192	14.3	256	15.1
	파악 안 됨	8	0.6	26	1.5

3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2021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제작·배포하고 있다. 교육자료는 2022년 7월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배포하고, 동영상은 유튜브, 나라배움터, 중앙교육연수원, 사회복지온라인 교육연수원, 지자체 평생학습포털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4개 부처 39개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기관·시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³¹⁾

전국 시·도 교육청(17개소), 부산광역시(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인천e배움캠퍼스), 대전광역시(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세종특별자치시(세종e배움터), 경기도(경기도평생학습포털),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평생학습포털), 병무청(사회복무연수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정신건강교육과), 국민연금공단(장애인지원실), 국민건강보험(요양기획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평생학습포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복지진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등

<그림 3-10>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배포처

신고의무자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교육 수료 결과는 공문을 통해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장애인권익지원과가 작성한 정보목록을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협조 요청’,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점검 계획(21.11.10.)’ 등의 공문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활용방안

신고의무자 대상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참석 현황 지표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부재하나, 조사대상을 보건복지부의 교육자료 배부처로 보고, 해당기관의 교육 수료 공문을 조사완료 대상으로 간주하여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3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8.4.)

또는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배포 현황을 파악하여 간접적으로 본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0.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현황

가. 메타데이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근거로 한다.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대상자는 지자체나 활동지원 기관에서 대상자를 추천한 후 본인(대리인)의 신청서를 받아 승인한다.³²⁾

나. 가용성 분석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현황에 대한 공표자료는 없으나, 이종성 의원실 요청에 의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현재,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지원받는 146,078명 중 장애인은 8,529명이다.³³⁾

2021년 전체 등록장애인 2,644,700명 대비 0.3%이고,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록장애인 984,813명과 비교해서도 0.9% 수준이다.

<표 3-23> 장애정도별 등록장애인 수(명)³⁴⁾, 2021

전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2,644,700	984,813	1,659,887

한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본정보’를 오픈 API 양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의 성별, 나이, 지역, 운영기

32)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2022년)

33) 에이블뉴스,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후화 ‘빨간불’(2022.10.20.)

34) KOSIS(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2022.10.30.

관 등의 항목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으나, 오픈 API 형식으로 제공된다는 것과 장애인구분 코드가 없다는 점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다.

반면,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전체 49.0%,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에서는 49.6%로 나타나,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3-24>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³⁵⁾, 2020

구분	전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예	49.0	49.6	48.2
아니오	51.0	50.4	51.8

보건복지부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가구 수를 2022년 말까지 총 20만 가구로, 2023년에는 총 30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응급상황 대처에 취약한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³⁶⁾

다. 활용방안

현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애인 대상자 관련 자료는 부재하나, 국회요구자료를 통한 대상자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 앞으로의 지원대상 확대 노력의 경과와 대상자 관리 차원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현황 자료 공표 노력이 필요하다.

11. 교육 및 거주 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율

가. 메타데이터

학교 등의 교육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율을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없다.

35)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2020년)

36)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2022.9.16.)

나. 가용성 분석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통합정보망을 통해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통합정보망은 감독기관, 학교,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므로 자료 여부 확인을 위한 접근은 어렵다.

이를 대신하여, 교육부 소속 공무원 및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교육연수현황³⁷⁾을 보면 안전 관련 교육 이수율은 86~94% 수준이다.

<표 3-25>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교육연수현황(명, %)³⁸⁾, 2020

과정명	승인인원(명)	이수인원(명)	이수율(%)
(안전)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	26,203	24,397	93
(안전)사고는 NO! 안전은 OK!	9,710	8,373	86
(안전)생활 속 안전 길잡이	6,140	5,750	94
(안전)수업 전 5분 안전을 잡아라	4,267	3,852	90
(안전)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안전한 학교, 함께 만들어 가요	13,430	12,350	92
(안전)학교 안전 위험성진단 Skill Up	3,006	2,713	90
(안전)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	19,242	17,642	92
(안전)학교안전사고 보상 및 학교안전교육의 이해	4,427	3,922	89
(안전)학생 생활 안전 매뉴얼	2,899	2,604	90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시설평가 자료에서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각 시설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보고한다. 평가내용 중에 시설안전 관련 교육 이수가 A영역(시설 및 환경)에 포함되어 있고, 이 항목의 평가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내용을 참고하여 평가하게 된다.

37)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파일데이터 다운로드, 2022.11.25.

38)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2020년)

평가지표	A2. (전체공통) 안전관리	
평가목표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시설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	
	② 매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③ 월 1회 이상 안전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하고 있다.	
	⑤ 시설 안전담당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고 있다.	
	⑥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가산점 적용)	
배점기준	• 우 수 (4점) : ①~⑤항목 중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①~⑤항목 중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①~⑤항목 중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①~⑤항목 중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 가산점 (0.3점) : ⑥번 항목이 해당된다.	가산점

<그림 3-11>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³⁹⁾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은 656개소에 대해 2016~2018년 시설운영에 대해 2019년에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A등급 개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3%(2016년)에서 55.5%로 5.2%p 늘어났다.

<표 3-26> 등급별 시설수 및 분포(개소, %)⁴⁰⁾, 2019

장애인거주시설	합계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90 미만)		C등급 (70~80 미만)		D등급 (60~70 미만)		F등급 (60 미만)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2016년	656	330	(50.3)	187	(28.5)	70	(10.7)	38	(5.8)	31	(4.7)
2019년	562	312	(55.5)	174	(31.0)	42	(7.5)	17	(3.0)	17	(3.0)
증감('19-'16)	94	18	(△5.2)	13	(△2.5)	28	(3.2)	21	(2.8)	14	(1.7)

영역별 평가점수에서는 안전관리 영역이 포함된 A영역(시설 및 환경)이 89.5%로 영역들 중 가장 높았다. 다만, 본 공표 결과로 세부 영역 및 항목별 점수를 알 수는 없었다.

39)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침(2022년)

4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3.31.) -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발표

<표 3-27> 영역별 평가점수(개소, 점)⁴¹⁾, 2019

A영역 (시설 및 환경)	B영역 (재정 및 조직운영)	C영역 (인적자원관리)	D영역 (프로그램서비스)	E영역 (이용자권리)	F영역 (지역사회관계)
89.5	79.1	80.2	88.1	88.1	85.9

다. 활용방안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율을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육연수현황을 통해 비추어 볼 수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율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시설이 이수 여부를 보고하고 있으나, 공개자료로 알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평가결과를 통해 개별시설별로 상위 6개 평가영역별 등급자료⁴²⁾를 찾아볼 수 있다. 본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세부영역별,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여 본 지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2. 교육 및 거주 시설의 재난대피 훈련 실시율

가. 메타데이터

학교 등의 교육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재난대피 훈련 실시율을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없다.

나. 가용성 분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 훈련으로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축소·간소화되었으나, 올해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300개 기관 주관으로 민간 기업, 단체 등 2,68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총 1,433회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⁴³⁾

지난 참여기관 및 현장훈련 결과자료에 의하면 2021년은 참여기관 322개, 비대면 토론 훈련을 실시로 인해 현장훈련은 3회 있었다.

4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3.31.) -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발표

42) 사회복지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2019년)

4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11.13.) -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동참해주세요

교육부에서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한다. 2022년 훈련에는 학교의 재난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초·중·고·대학 등 2만여 개 교육기간이 참여할 예정이다.⁴⁴⁾

<표 3-2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개, 회)⁴⁵⁾, 2012~2021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참여기관	402	407	435	470	488	526	634	705	-	322
현장훈련	43	95	180	303	337	388	548	568	-	3

이와 별개로, 소방청은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관계인 및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교육실적 인원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노유자시설의 소방교육실적 인원은 2020년 12월 말 기준 164,599명, 2021년 12월 말 기준 208,027명이다. 노유자시설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고 이외에도 노인, 아동, 노숙인 관련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 소방교육실적 자료를 통해 국공립학교 등의 참여인원 파악이 가능하다. 유·초·중·고·대학의 소방교육실적 인원은 2020년 12월 말 기준 2,277,577명, 2021년 12월 말 기준 2,633,018명이다.

<표 3-29> 공공기관 소방교육실적 인원(명)⁴⁶⁾, 2020~2021

연도	합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유치원	초등공 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유치원	초등공 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2020	2,277,577	99,037	972,535	441,383	365,477	15,363	120,965	29,017	66,723	141,438	25,639
2021	2,633,018	97,145	1,129,449	541,479	400,770	14,507	152,250	28,033	80,417	166,251	22,717

44) 교육부, 보도자료(2022.11.20.) -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4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2022년)

46) 소방청,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집(2021년, 2022년)

다. 활용방안

교육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의 재난대피 훈련 실시율을 훈련의 정의와, 포괄범위를 수정·확대하여 고려해 본다면 행정안전부의 안전한국훈련 참여기관 수나, 소방청의 소방교육실적 인원 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13. 소방기관의 장애인 거주지 파악률

가. 메타데이터

소방기관의 장애인 거주지 파악률을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없다.

나. 가용성 분석

장애인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장애인 수는 2,644,700명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 조항에 의거한 등록장애인 수로, 서울 392천 명, 경기 579천 명 정도이다.

장애인현황 통계는 각 지자체가 개인별 장애정보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망에 입력한 자료를 복지정보통계시스템 DB로 구축하여 작성하는데, 장애인현황에 대한 시군구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성별, 연령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 3-30> 시도별 장애인 수(명)⁴⁷⁾, 2021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644,700	392,123	176,451	127,282	148,646	69,819	72,489	51,330	12,63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78,668	101,714	97,839	134,749	132,057	139,868	182,538	189,621	36,876

장애인등록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된다.

4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2022년)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대학교 등이고, 이 중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청의 ‘소방청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기준으로 한다. 교육방법은 각 기관별로 실시하고, 실적결과를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⁴⁸⁾

이와 별개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직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도 이수하여야 하고,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을 통해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기관유형(A)>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유형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교육 수립(10)	연간 교육 계획 수립(10)	수립	10
		미수립	0
	기관장(10)	참여	10
		미참여	0
	교육 참여 (60)	70% 이상	10
		60% 이상 ~ 70% 미만	8
		50% 이상 ~ 60% 미만	6
		50% 미만	0
교육 실시 (90)	직원(40)	70% 이상	40
		60% 이상 ~ 70% 미만	30
		50% 이상 ~ 60% 미만	20
		50% 미만	10
	교육원방법 및 활용(30) 제2장 27제외지	전문강사* 및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제2장 28제외지	30
		* (전문강사) 장애인개발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개발원이 위촉한 강사	
		** (인식개선교육기관) 보건복지부 지정·위탁 교육기관	
		일반강사 교육	20
		내부직원 교육	15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	15
기점 (10)	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 실시	2회 이상 교육	5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기관 내부 필수 제도화* 마련 * (tip) 내부규정 제도화, 기관 장관·악관 반영 등	2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교육 의무 대상기관 미소속자* 교육 실시 * (tip) 지역주민 대상 교육 실시 등	1
		합계	100점 (가점 시 110점)

<그림 3-13> 장애인인식교육 실적배점표 및 실적관리시스템⁴⁹⁾

다. 활용방안

이 같은 장애이해를 위한 교육이 각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대상기관별로 입력되고,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8)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2022년)

49)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및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15. 경찰공무원 장애이해 교육 이수율

가. 메타데이터

경찰공무원의 장애이해 교육 이수율 자료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나. 가용성 분석

앞선 소방공무원 장애이해 교육 이수율 지표 내용과 동일하다. 각 국가기관은 장애인 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 활용방안

이 같은 장애이해를 위한 교육이 각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대상기관별로 입력되고,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6. 재난 발생 시 피난유도등, 시각경보기 등의 위치 인지 여부

가. 메타데이터

재난 발생 시 피난유도등, 시각경보기 등의 위치 인지 여부에 관한 데이터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나. 가용성 분석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국가승인통계 117035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법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에 따라 매개시설(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내부시설(계단 또는 승강설비 등), 안내시설(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보 및 피난설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상벨(시각장애인설비)의 설치율은 84.5%이며, 경광등(청각장애인설비) 설치율은 77.5%이다.

<표 3-31> 안내시설 - 경보 및 피난설비 조사결과(개, %)⁵⁰⁾, 2018

구분	대상 건물수	설치수	설치율(%)
시각장애인설비 연속적 설치	48,844	41,253	84.5
청각장애인설비 연속적 설치	48,829	37,852	77.5

50)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고서(2018년)

다만, 이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지표의 정의와 대상과는 다르다.

장애인실태조사는 2020년 기준 7,025명에 대해 장애인 심층 조사를 완료한 바 있는데, 조사표는 ‘복지서비스’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이용경험 및 만족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지 및 이용경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1. 다음은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각 기관의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한 향후 이용을 희망하십니까?									
기 관 명 (※조사원은 한 항목씩 질문하고 해당되는 곳에 'O'표 하시오)		이용경험여부		향후 이용희망			이용 경험 여부	이용 희망 여부	
		있다	없다	희망함	희망 안함	비해당			
직업 (공통)	01) 직업재활시설	①	②	①	②	③	01)		
지역 사회 재활 시설	공통	02) 장애인복지관 (농아인복지관,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 단종 복지관 포함)	①	②	①	②	③	02)	
		0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①	②	①	②	③	03)	
		04) 장애인 체육시설	①	②	①	②	③	04)	
		05) 장애인 생활아동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③	05)	
		06)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③	06)	
		07) 장애인 도서관	①	②	①	②	③	07)	
		시각	08) 점자 도서관	①	②	①	②	③	08)
	청각	09) 수어통역 센터	①	②	①	②	③	09)	
	기타 지역사회 재활시설	10) 교통약자아동지원센터 (장애인콜택시, 해피콜 등)	①	②	①	②	③	10)	
11)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①	②	①	②	③	11)		
1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①	②	①	②	③	12)		
1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③	13)		
14) 정신건강복지센터		①	②	①	②	③	14)		
의료재활	15) 장애인 재활병·의원	①	②	①	②	③	15)		
	16) 장애아동 전문 재활병원	①	②	①	②	③	16)		
정신장애	17)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①	②	①	②	③	17)		
	18) 정신재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등)	①	②	①	②	③	18)		
발달장애 (지적장애· 치매성장애)	19) 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③	19)		
	20)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①	②	①	②	③	20)		
교육	21) 특수교육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③	21)		
	22) 성인장애인 교육시설	①	②	①	②	③	22)		
기타	2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③	23)		
	2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①	②	①	②	③	24)		
	25) 장애인 단체	①	②	①	②	③	25)		

<그림 3-14> 장애인실태조사 조사표 일부

다. 활용방안

장애인실태조사가 등록장애인을 모집단으로 하는 장애인 대상 심층조사이므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경험 문항을 활용하여, 안내시설 인지 여부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피난유도등, 시각경보기 위치 인지 여부 지표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를 통해 피난유도등, 시각경보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실태조사 등 장애인대상 조사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제 4 장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 안전지표 중 통계 미작성 지표의 가용자료를 발굴하여, 지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모든 장애인 안전지표가 장애인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지표와 관련되는 각각의 안전정책을 평가하고, 그로써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개별지표 하나하나가 각 분류와 영역 안에서 다른 지표와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 지표의 의미나 상징성마저 힘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를 통해 통계 미작성 지표들이 지표로서 역할을 하는 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용자료들이 힘을 보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통계가 없는 지표들의 새로운 데이터원을 구축하여 지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표의 개념 확장 및 대체를 도모하여 최대한 지표의 설명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애인과 관련한 항목들을 분류해 내고, 활용도 높은 자료를 취사선택하였다.

이상의 설명 가능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지표를 수치화하여 보여주기도 하고(지표번호 2, 50), 지표의 정의에 활용된 기존통계가 아닌 다른 새로운 통계에 의해 산출될 수도 있다(지표번호 5, 6). 지표와 유사하거나 확장된 정의나 개념과 연관되는 자료원으로 설명될 수도 있고(지표번호 9, 26, 54, 55), 지표의 대체 개념을 적용하여 연관된 자료원과 매칭시킬 수도 있다(지표번호 60).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데이터원을 확인하지 못한 지표는 연관자료 안에서의 수치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지표번호 1, 4, 44, 45, 56, 57, 58). 이 결과는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이같은 결론에도, 일부 지표의 경우, 통계작성이 가능하거나 관련 자료가 수집되고 있음에도 그 결과가 공개자료가 아닌 통계작성기관의 내부자료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가용방법을 기술한 지표의 경우는 통계작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합의와 합의 및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활용할 수 없어 아쉽다.

따라서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장애인 안전지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통계작성기관, 장애인 정책 입안부처 및 실행기관 간 통계 미작성 지표 생산 및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표 4-1> 통계 미작성 지표별 데이터 가용성 분석 결과

순번	지표 번호	지표명	통계 작성/미작성 현황			데이터 가용성 분석 결과				
			수치	통계(정보)	작성기관	지표변형	수치	가용방법	통계(정보)	작성기관
1	1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상자 수	-	재난연감	행정안전부	-	-	각 재난주관기관별 보고양식의 개인정보 활용	산불통계 화재발생총괄표 해양사고현황 산업재해현황	산림청 소방청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2	2	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	-	국가화재 정보시스템	소방청	-	사망자: 36명, 부상자: 57명('21년) *8개 장애유형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소방청
3	4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	-	법정감염병 발생보고	질병관리청	-	-	감염병보고체계 보고양식의 개인정보 활용	법정감염병발생보고 결핵환자신고현황 HIV/AIDS신고현황	질병관리청
4	5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	자연재해현황	행정안전부	-	-	자연재난 인명피해 보고양식의 개인정보 활용	자연재해현황	행정안전부
						-	-	사망원인별(자연의 힘에 노출) 장애인 수 산출	장애인건강보건통계	보건복지부
5	6	온열·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자 수	-	온열·한랭 질환응급실 감시체계	질병관리청	-	-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양식의 개인정보 활용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질병관리청
						-	-	사망원인별(과다한 자연열·자연한랭에 노출) 장애인 수 산출	장애인건강보건통계	보건복지부

순번	지표 번호	지표명	통계 작성/미작성 현황			데이터 가용성 분석 결과				
			수치	통계(정보)	작성기관	지표변형	수치	가용방법	통계(정보)	작성기관
6	9	인권침해 경험	-	인권의식 실태조사	국가인권 위원회	차별 경험 (장애를 이유로)	1.4%('21년)	-	인권의식실태조사	국가인권 위원회
						사회적 차별 경험 (지역사회생활 시)	6.8%('20년)	-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7	26	건강관리 실천율 (금연, 절주, 걷기)	-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병관리청	건강관리 실천율 (아침식사, 적정수면, 규칙적운동, 정기건강검진)	25.5%('20년)	-	사회조사	통계청
8	44	장애인 시설별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	-	-	-	재난대응 매뉴얼 배부현황	-	-	-	행정안전부
9	45	신고의무자 대상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참석 현황	-	-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배부현황	-	-	-	보건복지부
						-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적결과	-	보건복지부
10	50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지원현황	-	-	-	-	8,529명('22.8월)	-	이종성 의원실 요구자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11	54	교육 및 거주 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율	-	-	-	교육시설의 안전관련 교육 이수율	86~94%('20년)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교육연수현황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및환경)평가점수	89.5점('19년)	-	사회복지시설 평가 발표	보건복지부
						-	-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등록을 통한 교육이수정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순번	지표 번호	지표명	통계 작성/미작성 현황			데이터 가용성 분석 결과				
			수치	통계(정보)	작성기관	지표변형	수치	가용방법	통계(정보)	작성기관
12	55	교육 및 거주 시설의 재난대피 훈련 실시율	-	-	-	안전한국훈련 참여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등	322개('21년)	-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소방교육실적 인원 *유·초·중·고·대학	2,633천 명('21년)	-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집	소방청
13	56	소방기관의 장애인 거주지 파악률	-	-	-	-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개인정보 활용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보건복지부
14	57	소방공무원 장애이해 교육 이수율	-	-	-	-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활용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한국장애인 개발원
15	58	경찰공무원 장애이해 교육 이수율	-	-	-	-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활용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한국장애인 개발원
16	60	재난 발생 시 피난유도등, 시각경보기 등의 위치 인지 여부	-	-	-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율	(시각설비)84.5%, (청각설비)77.5% ('18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보건복지부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보고서.
- 국립재활원. (2022). 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
-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
-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202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2).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침.
- 보건복지부. (2022).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고서.
- 소방청. (2021·2022).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집.
- 질병관리청. (2021).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질병관리청. (2021).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 질병관리청. (2022). 한파으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
- 통계개발원. (2021). 장애인 안전지표 개발 연구.
-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 행정안전부. (2020).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 행정안전부. (2020). 재난연감-사회재난.
- 행정안전부. (2020). 재해연보-자연재난.
- 행정안전부.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 행정안전부.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

Abstract

A Study on Data Availability of Safety Indicators for the Disabled

Jo Jin hye, Min Kyung ah

Some of the safety indicators for the disabled (the number of deaths from natural disasters of the disabled, the number of deaths from infectious diseases of the disabled, health care practice rate of the disabled, etc.) are difficult to use owing to the lack of relevant data.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safety indicators of the disabled, this paper tried to discover data sources that can be linked to 16 indicators that don't have corresponding statistical information among a total of 64 safety indicators of the disabled.

As a result of the study on data availability of indicators not producing statistical data, 9 indicators out of 16 indicators were found to have the possibility of data linkage. There were indicators for which directly matched data were discovered. However, as for most of indicators, by changing or supplementing the definition or category of the relevant indicator, data with high relevance were discovered, or statistical production methodologies were proposed.

Two indicators of 2. The number of casualties from fire and 50. Emergency safety notification service support status have partially matched statistical data.

On the other hand, five indicators of 9. Human rights violation experience, 26. Health care practice rate, 54. Safety management education completion rate of educational and residential facilities, 55. Evacuation drill implementation rate of educational and residential facilities and 60. Whether to recognize the location of evacuation guidance light or visual alarm in case of disaster have relevant statistical data. Therefore, these indicators can be reviewed from the concept of complementing or replacing indicators.

Whereas, two indicators of 5. The number of deaths from natural disasters and 6. Number of casualties from heat and cold diseases have relevant statistical data. As of now, these data are not publicized for the disabled, but statistical data on the disabled can be produced because they are administrative data.

Lastly, among indicators not producing statistical data, the other 7 indicators have no matching or relevant data. Since it is possible to produce data by using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in the process of report or registration to related agencies, the use of these report or registration data was proposed. However, agreements on the necessity of producing indicators and discussions on the provision of indicators among agencies in charge of indicators should be prioritized.

Key words: Safety indicators for the disabled, indicators not producing statistics, analysis of data availability

집필진

- 조진혜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통계연구팀 주무관)
- 민경아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통계연구팀 사무관)

연구보고서 2022-12

장애인 안전지표 데이터 가용성 연구

인 쇄 2023년 4월 일
발 행 2023년 4월 일
발 행 인 통계개발원장 송준혁
발 행 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Online) 2733-4120





통계청
통계개발원